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3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황명선·송재봉·염태영

김준형 · 신영대 · 송옥주

모경종 • 이해식 • 유준병

안규백 · 박희승 · 이재관

안태준 • 박해철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더해,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충전소가 늘어나면서 LPG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실정임.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LPG 셀프 충전을 이미 활성화했음. 셀프 충전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 되고 있음. 그러나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 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친환경 충전설비 추가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건기·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를 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충전 받아야 한다.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친환경 충전설비 추가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기 • 수 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